

[별표 26] <개정 1999.1.25, 2001.10.16, 2003.1.4>

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(제91조관련)

검사항목	검 사 기 준	검사방법
가. 검사전 확인	검사 받기에 적합할 것	(가)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
	(1)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	(나) 경유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여야 함
	(2)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,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	정화용 촉매, 매연여과장치 및 기타 육안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
	(3)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훼손 되어 있지 않을 것	조속기, 정화용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 훼손여부를 확인
나. 배출가스 검사 대상 자동차의 상태	(4)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	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이전 또는 최종배기구이전에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
	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	
	(1)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	(가) 수냉식 기관의 경우 계기관 온도가 40℃ 이상 또는 계기관 눈금이 1/4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원동기실 덮개를 열고 5분이상 경과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 (나) 온도계가 없거나 고장인 자동차는 원동기를 시동하여 5분이 경과된 후 측정
	(2) 변속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것	변속기의 기어는 중립(자동변속기는 N)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(연결된 상태)인지 여부를 확인
다.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	(3) 냉방장치 등 부속장치는 가동을 정지 할 것	냉·난방장치, 서리제거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
	(1)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의 측정 결과가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공기과잉률( $\lambda$ )을 측정하여 그 범위가 $1 \pm 0.10$ 이내일 것. 다만, 기화기식 연료공급 장치 부착 자동차는 그 범위가 $1 \pm 0.15$ 이내,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$1 \pm 0.20$ 이내이어야 함	(가)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정지가동상태(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)에서 시료 채취관을 배기관내에 30cm이상 삽입한다. (나)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0.1%단위로, 탄화수소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1ppm단위로, 공기과잉률( $\lambda$ )은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0.01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. 단,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.
	(2) 여지반사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매연농도가 운행차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할 것	(가) 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(정지가동상태)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(Idle) 상태로 5-6초간 둔다.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다.

검사항목	검사기준	검사방법
다. 배출가스 및 공기 과잉률 검사	(2) 여지반사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매연농도가 운행차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할 것	(나)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을 배기관에 증상에 오도록 하고 20cm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. (다)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4초 이내로 하고 그 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. (라) 위 다항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된 매연농도를 산술 평균하여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한다. 이때 3회 측정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%를 초과하는 때에는 2회를 다시 측정하여 총 5회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회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다.

- 비고 : 1.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.
2. 삼원 또는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전 운전영역에서 희박연소(Lean Burn)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공기 과잉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